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page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제1장 사업 개요				
p.1~2	2. 관련 근거	<신설>	<p><u>나. 「의료법」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u></p> <p><u>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u></p> <p><u>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u></p>	근 거 조 문 추가
p.4	3. 사업 주요내용	<p>나. 사업 대상</p> <p>3) 대상 환자</p> <p><생략></p>	<p>나. 사업 대상</p> <p>3) 대상 환자</p> <p><현행과 동일></p>	대상환자 추가

page	구분	현행	개정	비고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적용대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의원급 의료 기관</td> <td>대면진료 경험자</td> <td>▪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td> </tr> <tr> <td rowspan="3">예외적 허용</td> <td>취약지역</td> <td>▪ 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td> </tr> <tr> <td>취약 시간대</td> <td>▪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td> </tr> <tr> <td>취약계층</td> <td>▪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td> </tr> <tr> <td rowspan="2">병원급 의료 기관</td> <td rowspan="2">대면 진료 경험자</td> <td>희귀 질환자</td> <td>▪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적용자</td> </tr> <tr> <td>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td> <td>▪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 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 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	취약 시간대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 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 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적용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적용대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의원급 의료 기관</td> <td>대면진료 경험자</td> <td>▪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td> </tr> <tr> <td rowspan="3">예외적 허용</td> <td>취약지역</td> <td>▪ 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td> </tr> <tr> <td>취약 시간대</td> <td>▪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td> </tr> <tr> <td>취약계층</td> <td>▪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td> </tr> <tr> <td rowspan="2">병원급 의료 기관</td> <td rowspan="2">대면 진료 경험자</td> <td>희귀 질환자</td> <td>▪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td> </tr> <tr> <td>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td> <td>▪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td> </tr> <tr> <td>전체 의료기관</td> <td>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td> <td>▪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 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 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	취약 시간대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 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 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전체 의료기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구분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 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 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																																										
		취약 시간대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 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 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적용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구분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 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 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																																										
		취약 시간대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 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 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전체 의료기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제2장 사업 세부내용																																													
p.8	1. 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나. (대상환자) <생략> <신설>	나. (대상환자) <현행과 동일> 3) 전체 의료기관 대상환자 ○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환자 추가																																									

page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제5장 시범약국 준수사항																										
p.25	1. 일반 준수사항	마. 비대면조제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약국은 비대면조제만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조제 거부시 약사법 제 24조제1항 위반에 해당) ○ 시범약국은 해당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신설></p>	마. 비대면조제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약국은 비대면조제만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조제 거부시 약사법 제 24조제1항 위반에 해당) ○ 시범약국은 해당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u>* 단,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후 비대면조제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u></p>	비대면조제 관련 전담기관 예외사항 추가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p.29~30	2. 대상환자 관련	Q2.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조제를 받을 수 없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의료 기관</th> <th style="width: 10%;">대상 환자</th> <th style="width: 30%;">기준</th> <th style="width: 50%;">확인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의원급 의료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면 진료 경험자</td> <td>·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확인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 취약 지역</td> <td>■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td> <td>■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td> </tr> </tbody> </table>	의료 기관	대상 환자	기준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확인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예 취약 지역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	Q2.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조제를 받을 수 없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의료 기관</th> <th style="width: 10%;">대상 환자</th> <th style="width: 30%;">기준</th> <th style="width: 50%;">확인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의원급 의료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면 진료 경험자</td> <td>·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확인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 취약 지역</td> <td>■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td> <td>■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td> </tr> </tbody> </table>	의료 기관	대상 환자	기준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확인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예 취약 지역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	대상환자 내용 변경 및 문구 정비
의료 기관	대상 환자	기준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확인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예 취약 지역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																							
의료 기관	대상 환자	기준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확인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예 취약 지역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																							

page	구분	현행	개정	비고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50 193 539 638" rowspan="3">외적 허용</td> <td data-bbox="546 193 651 507"></td> <td data-bbox="658 193 943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td> <td data-bbox="949 193 1158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td> </tr> <tr> <td data-bbox="546 512 651 638">취약 시간대</td> <td data-bbox="658 512 943 6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td> <td data-bbox="949 512 1158 6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의료기관) 진료일자, 진료시간 확인 </td> </tr> <tr> <td data-bbox="546 643 651 1117">취약 계층</td> <td data-bbox="658 643 943 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관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td> <td data-bbox="949 643 1158 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td> </tr> <tr> <td data-bbox="450 1121 539 1463">병원급 의료기관</td> <td data-bbox="546 1121 651 1463">대면 진료 경험자</td> <td data-bbox="658 1121 943 14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td> <td data-bbox="949 1121 1158 14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 여부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대면진료 경험 여부) </td> </tr> </table>	외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취약 시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의료기관) 진료일자, 진료시간 확인 	취약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관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 여부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대면진료 경험 여부)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182 193 1279 1085" rowspan="3">적 허용</td> <td data-bbox="1285 193 1391 507"></td> <td data-bbox="1397 193 1682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td> <td data-bbox="1688 193 1897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td> </tr> <tr> <td data-bbox="1285 512 1391 638">취약 시간대</td> <td data-bbox="1397 512 1682 6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td> <td data-bbox="1688 512 1897 6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의료기관) 진료일자, 진료시간 확인 </td> </tr> <tr> <td data-bbox="1285 643 1391 1085">취약 계층</td> <td data-bbox="1397 643 1682 1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관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td> <td data-bbox="1688 643 1897 1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td> </tr> <tr> <td data-bbox="1182 1090 1279 1463">병원급 의료기관</td> <td data-bbox="1285 1090 1391 1463">대면 진료 경험자</td> <td data-bbox="1397 1090 1682 14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td> <td data-bbox="1688 1090 1897 14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 여부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대면진료 경험 여부), 국민건강보험 </td> </tr> </table>	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취약 시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의료기관) 진료일자, 진료시간 확인 	취약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관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 여부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대면진료 경험 여부), 국민건강보험 	
외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취약 시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의료기관) 진료일자, 진료시간 확인 																												
	취약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관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 여부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대면진료 경험 여부) 																													
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취약 시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의료기관) 진료일자, 진료시간 확인 																													
	취약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관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서비스 확인 ■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 여부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대면진료 경험 여부), 국민건강보험 																													

page	구분	현행	개정	비고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56 204 546 507">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td> <td data-bbox="553 204 949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에 한함 </td> <td data-bbox="956 204 1155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비스(산정특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td> </tr> </table>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비스(산정특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193 204 1283 507">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td> <td data-bbox="1290 204 1686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에 한함 </td> <td data-bbox="1693 204 1892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자격확인서비스(산정특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td> </tr> <tr> <td data-bbox="1193 512 1283 667">전체 의료기관</td> <td data-bbox="1290 512 1686 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td> <td data-bbox="1693 512 1892 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의료기관) 해당 기간 여부 확인 </td> </tr> </table>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자격확인서비스(산정특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전체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의료기관) 해당 기간 여부 확인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비스(산정특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자격확인서비스(산정특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 기록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전체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의료기관) 해당 기간 여부 확인 											
p34		<신설>	<p>Q9.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공고를 통해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환자 추가에 따라 질의응답 추가									